

광주 모텔 방화·화재 투숙 53명 중 33명 사상

불 난 3층·4~5층 피해 컸다

소방당국 “투숙객 49명·관계자 4명...20명은 자력 대피”

광주시 두암동 모텔 방화 화재

22일 오전 5시 45분 광주 북구 두암동 모텔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 투숙객 33명이 연기흡입과 호흡곤란, 화상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 이중 2명이 숨지고, 10명이 중상이다.



광주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지른 불로 2명이 숨지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불이 난 3층과 4·5층 등 위층에 있던 투숙객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 발생 당시 모텔에는 32개 객실에 투숙객 49명과 주인과 관

계자 4명 등 5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텔은 1층에 카운터 등이 있고 2~5층이 객실이다.

모텔 주인은 주말이라 객실 32개 객실 중 5개를 뺀 객실이 모두 잘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2,3층 투숙객이 대부분인 20명은 자력은 탈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객실에 있던 투숙객 33명은 연기 흡입과 화상 피해 등을 입어 1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0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모텔 주인과 관계자 등을 통해 화재 당시 53명이 모텔에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33명을 이송했고 모텔 안에 갇혀 있거나 남아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 모텔은 화재 발생 당시 자동 화재탐지시설 비상벨은 울렸으나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스크린클러 설치 의무가 아니었던 1996년도에 허가가 난 건물”이라며 “숙박시설의 경우 6층 이상, 1000㎡ 이상이면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5층이상의 의무설치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5시45분쯤 모텔 308호실에서 시작돼 3층 복도를 태우고 30여분 만인 오전 6시7분쯤 진화됐다.

경찰은 모텔 308호실에 묵었던 김모씨(39)가 불을 지른 것을 확인, 긴급체포했다.

불 지르고 나갔다가 짐 챙기려 다시 와 화상 입은 방화범

횡설수설하며 병원 치료 중...정확한 방화 동기 조사 중

“제가 불을 지른 것이 맞습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불이 나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하던 중 모텔 3층 객실에 묵었던 김모씨(39)가 불을 지른 것을 확인,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인 뒤 불을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지를 풀어 불을 옮겨 붙였다.

불이 확산되자 김씨는 이불로 덮어놓은 뒤 객실을 나섰다가 방에 짐을 두고 온 것을 깜빡해 다시

객실을 찾았다.

김씨가 방문을 열면서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이 확산 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불이 거세지고 연기를 마신 김씨는 모텔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CCTV 등을 토대로 김씨가 불을 지른 것을 확인한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용의자의 신변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불을 질렀냐”고 묻자 김씨는 “제가 불을 지른 것이 맞습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확한 진술을 못 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난폭·보복·음주운전

100일 특별단속 ‘호응’

전남경찰청, 2093건 적발

전남지방경찰청은 난폭·보복·음주운전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총 209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9월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난폭운전 151건, 보복운전 38건을 단속했다. 음주운전은 190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243건에서 235건으로 3.2%가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0명에서 4명으로 60%가 줄어들었다.

경찰은 일명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처벌기준이 강화

난폭운전 151건 보복 38건

음주는 감소...1904건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

되면서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한다.

이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 증가지역에 대한 상시단속과 경찰경력·장비를 최대 동원한 일제 합동단속을 월 2회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서별로 주·야불문 불시 스포티등식 음주단속도 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음주운전 근절분위기 정착을 위해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전화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이슈판결 II

밥 늦게 준다는 장인 폭행 사위...집행유예 2년

광주지법 “죄책 가볍지 않아”

식사를 차리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장인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7시쯤 광주에 있는 장인 B씨(82)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부인이 식사를 차리고 있는데 B씨가 식사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의 일로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넘어지는 B씨의 몸에 밀려 쓰러지는 장판을 붙잡으려고 급하게 다가가다 B씨의 배를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장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B씨가 암별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에 이르러 된 경위, 폭행 정도,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미수 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광주고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문”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받았다.

A씨는 2015년 12월말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B씨(24·여)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장 후배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A씨가 성폭행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언행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두 사람이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고의를 가지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보면 A씨가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B씨의 진술을 보면 신빙성에 의문이 들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진술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주지의 거실이었고,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집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 및 장소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모텔에 들어간 경위와 집에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아무분도 선명히 기억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을 보면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는 내용이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진술이 담겨 있다”며 “A씨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모순되는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